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KODEX국고채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형[주식] 집합투자기구
- 다. 보관 · 관리기간: 2010.06.11~ 2011.06.10
-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에이치엠씨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케이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TB투자증권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 일자	변경 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0.10.14	제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

		8.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탁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10.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탁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010.12.29	제34조(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추 가 2.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다) 3.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시행령제268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 · 할인 · 매매 · 중개 · 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 · 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이하 “어음”이라 한다) 3.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4.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시행령제268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35조(투자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한다 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추 가 2. 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한다. 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3. 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 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 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1. ~ 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증권 등자산의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의규정을위반 게되는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 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1. ~ 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증권 등자산의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의규정을 위반하게되는경우
제36 조(운 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 게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 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 에 따른다. 1. 생략 2. 파생상품매매에 위한평가액이투자신탁 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 액의100분의10을 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3. ~ 4. 생략 ②제35조 및 이 조 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 피하게 제35조제1항제 2호, 이 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 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1. ~ 5. 생략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일부터 1월간은 제35조 제1항제3호, 제1항제2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 게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 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 에 따른다. 1. 생략 2. 파생상품매매에 위한평가액이투자신탁 의자산총액의100분의 10을 초과하여투자하는 행위 3. ~ 4. 생략 ②제35조 및 이 조 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 피하게 제35조제1항제 3호, 이 조 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 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월이내에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 로 매각이 가능한 증권 은 매각이 가능한 시 기까지 이를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일부터 1월간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없음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 ·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안진회계법인	1년	220만원	서면계약	-	-	-	-	-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